
대학안전관리계획

2023. 2.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 1.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1
-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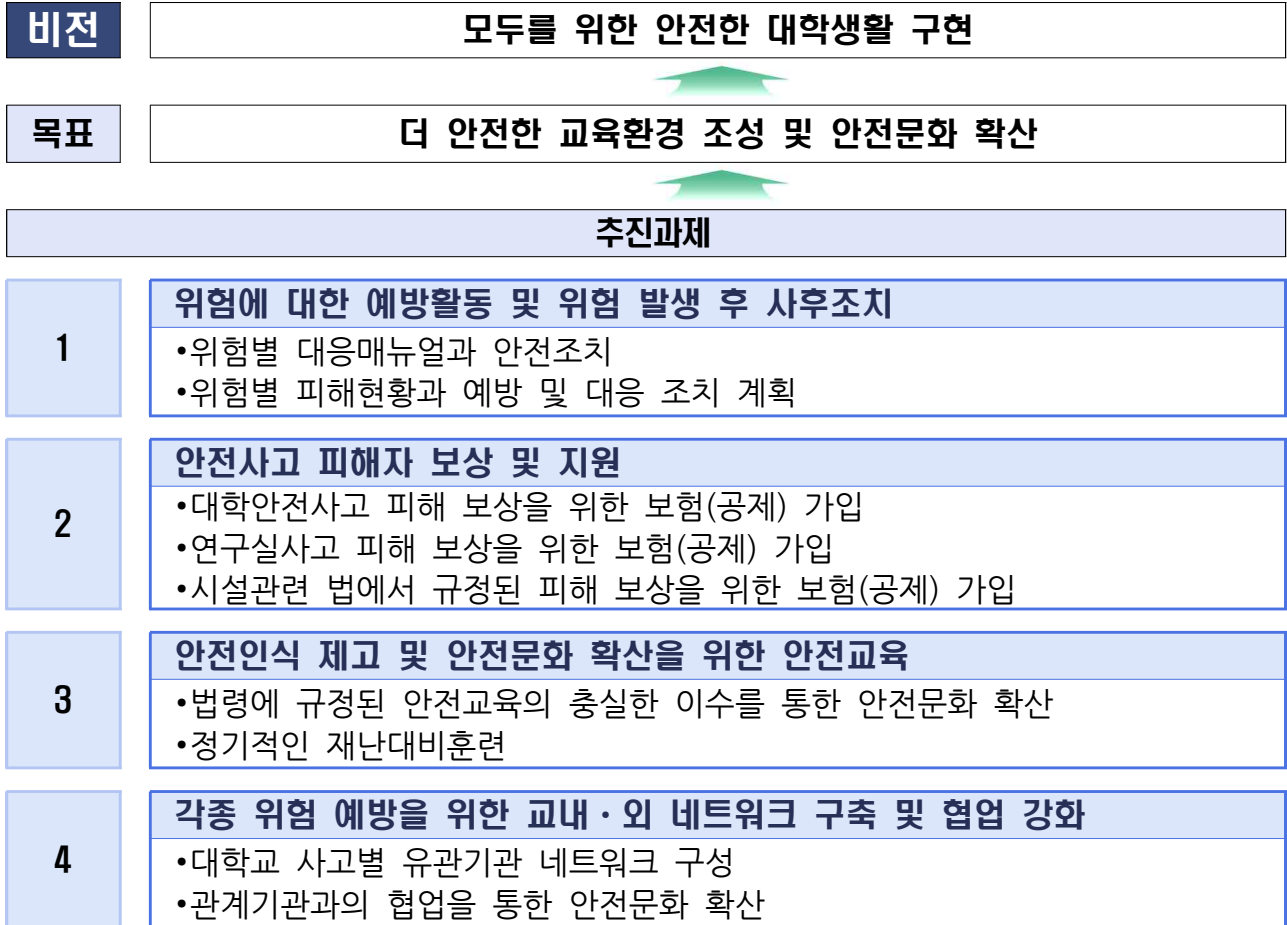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1

- 1. 재난 11
 - ① 자연재난 11
 - ② 사회재난 17
- 2. 안전사고 20
 - ① 대학 안전사고 20
 - ② 외국인 학생안전사고 28
 - ③ 교육시설 안전사고 31
 - ④ 연구실 사고 35
- 3. 감염병 확산 38
 -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8
 - ② 생활관 결핵 예방 44
- 4. 범죄 45
 - ① 일반범죄 45
 - ② 성범죄 50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54
 - ① 산업재해 54
 - ② 중대재해 61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67

대학 안전관리계획 개요

1.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7조의 2에 따른 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 기본 방향

- 교육시설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이행사항으로 규정
- 우리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우리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업무의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안전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 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1.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목원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전 화	042-829-7114	FAX	홈페이지 www.mokwon.ac.kr
총장	이희학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방재인 (직책: 관리처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2022.10. 재학생 기준)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6,491	356	288	7,135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현업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111	279	26	- (외부전문인력 17)	-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교내 자동제세동기 위치

1. 학생회관 1층 로비
2. 학생회관 1층 보건소
3. 도서관 1층 경비실 앞
4. 신축생활관 3층 로비
5. 사회과학관 지하1층 보안팀 상황실

② 일반안전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소관기관별 직제규정 중심으로 안전 관련 주요 임무·기능 기재

□ 담당부서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비 고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과	
1. 재난	자연재난		시설과	
	사회재난		시설과	
2. 안전사고	대학 안전 사고	학생안전사고	학생복지과	
		일반안전사고	시설과	
	외국인유학생 안전사고		국제교류과	
	교육시설안전사고		시설과	
	연구실 사고		시설과	
3.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대책위원회	
	생활관 결핵 예방		생활관	
4. 범죄	일반범죄		관리과	
	성범죄		학생상담센터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시설과	
	중대재해처벌		시설과	

□ 재난안전관리 체계

○ 재난 심각단계 이전



○ 재난 심각단계 (대규모 피해 발생 시)



□ 재난관리본부 구성·운영 (심각단계 발생 시)



* 편성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소방 자위소방대 구성반에 따라 협조

※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재난·안전 사고

-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주요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자연재난	시설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주관부서	
				계장	임○○	7192, piano@mokwon.ac.kr		
		담당	장○○	7196, jjh@mokwon.ac.kr				
		비상연락	총무과	과장	오○○	7161, heawon@mokwon.ac.kr		협조부서
	담당			윤○○	7163, dahye@mokwon.ac.kr			
	② 사회재난	사회재난	시설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주관부서	
				담당	박○○	7197, lucky010000@mokwon.ac.kr		
		생활관 소방훈련	생활관	담당	장○○	7196, jjh@mokwon.ac.kr	협조부서	
				관장	최○○	7400, m389003@mokwon.ac.kr		
			비상연락	총무과	조교	김○○		7403, oh6304@gmail.com
과장					오○○	7161, heawon@mokwon.ac.kr		
담당	윤○○	7163, dahye@mokwon.ac.kr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학생안전	학생복지과	부처장	김○○	7141, studen@mokwon.ac.kr	주관부서	
				직원	강○○	7142, studen@mokwon.ac.kr		
		교통생활안전	시설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주관부서
				계장	임○○	7192, piano@mokwon.ac.kr		
		보건진료	보건진료소	담당	장○○	7196, jjh@mokwon.ac.kr		협조부서
				담당	이○○	7183, lhy2962@mokwon.ac.kr		
	비상연락	총무과	담당	이○○	7156, heho2014@naver.com			
			과장	오○○	7161, heawon@mokwon.ac.kr			
	담당	윤○○	7163, dahye@mokwon.ac.kr					
	② 외국인유학생안전사고	외국인유학생안전	국제협력처	처장	천○○	7130, cmh@mokwon.ac.kr	주관부서	
				부처장	권○○	7129, daniel1978@mokwon.ac.kr		
			국제교류과	과장	김○○	7131, youngmi@mokwon.ac.kr		
				담당	노○○	7132, jane@mokwon.ac.kr		
				담당	김○○	7137, jin320003@mokwon.ac.kr		
담당				당○○○	7136, dtdien1207@mokwon.ac.kr			
담당	하○	7138, heyi01@mokwon.ac.kr						
③ 교육시설안전사고	총괄 전기 전기 소방 연구실 건축 통신 설비 안전 콘서트홀 조경	시설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주관부서		
			계장	임○○	7192, piano@mokwon.ac.kr			
			담당	김○○	7198, kwan1104@mokwon.ac.kr			
			담당	박○○	7197, lucky010000@mokwon.ac.kr			
			담당	정○○	7194, yong@mokwon.ac.kr			
			담당	윤○○	7195, gubongmt@mokwon.ac.kr			
			담당	김○○	7193, shj0925@mokwon.ac.kr			
			담당	장○○	7196, jjh@mokwon.ac.kr			
			담당	이○○	7916, conhall@mokwon.ac.kr			
			담당	김○○	8288, 822007@mokwon.ac.kr			
④ 연구실안전사고	연구실안전	시설과	담당	임○○	8285, 818031@mokwon.ac.kr	주관부서		
			담당	박○○	7197, lucky010000@mokwon.ac.kr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감염병 안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	학생처장	전○○	7937, studen@mokwon.ac.kr	주관부서
				학생복지 부처장	김○○	7141, studen@mokwon.ac.kr	
				관리처장	방○○	7180, bjaein@mokwon.ac.kr	
				생활관장	최○○	7400, m389003@mokwon.ac.kr	
	② 생활관 결핵예방	생활관 결핵예방	생활관	관장	최○○	7400, m389003@mokwon.ac.kr	주관부서
				조교	김○○	7403, oh6304@gmail.com	
4. 범죄	① 일반 범죄	범죄 안전	관리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주관부서
				담당	이○○	7183, lhy2962@mokwon.ac.kr	
	② 성범죄	성범죄 안전	양성평등 상담소	소장	류○○	7434, ryubr@mokwon.ac.kr	주관부서
				교수	이○○	8181, hyoju.lee@mokwon.ac.kr	
5. 산업 재해 및 중대 재해	① 산업 재해	산업 안전	시설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주관부서
			시설과	계장	임○○	7192, piano@mokwon.ac.kr	
			시설과	담당	장○○	7196, jjh@mokwon.ac.kr	
	② 중대 재해	중대 안전	시설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주관부서
			시설과	계장	임○○	7192, piano@mokwon.ac.kr	
			시설과	담당	장○○	7196, jjh@mokwon.ac.kr	

※ 야간 비상연락망 : 042-829-7301, 010-5922-8656(업무용)

□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기관 담당 부서	비 고
	전 화 번 호		
교육부 (moe119@moe.go.kr)	044-203-6658	(주간)교육안전정책과	
	044-203-7132	(주간)교육시설과	
	044-203-6188	비상안전담당	
	044-203-6118	(야간)당직실	
행정안전부	044-205-1540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대전광역시	042-270-3119	재난안전상황실	
대전서부소방서	042-270-1713	소방행정과	
경찰서부경찰서	042-600-3112	종합상황실	
	042-600-3381	정보안보외사과	국제교류과
대전서구보건소	042-288-4500	대표번호	
한국전기안전공사(대전)	042-388-5600	검사기술부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	042-719-3001	안전지원부	
건양대학교병원(대전)	042-600-9119, 9129	응급의료센터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66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화학물질안전원	042-605-7030	화학사고	연구실 사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301~2	산재예방지도과	산업재해/중대재해
질병관리청	1339	감염병전문콜센터	
여성가족부	02-2100-6437		양성평등상담소
대전출입국사무소	042-220-2127		국제교류과

□ 주요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예시)

[진행단계별 대응]

구분	대응 조치		경보단계
징후 감지	재난 징후 접수 후 감시활동 가화 및 긴급대응 조치 단계		예방·대비 ~ 관심·주의
	[1] 징후접수	[1-1] 징후접수	
	[2] 징후전파 및 보고	[2-1] 징후전파 [2-2] 징후보고	
초기 대응	재난 발생 직후 상황접수로부터 초기 현장대응을 실시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상기구 설치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단계		경계
	[3] 상황접수	[3-1] 상황접수	
	[4] 상황전파 및 보고	[4-1] 상황전파	
		[4-2] 상황보고	
	[5] 상황판단회의	[5-1] 상황판단회의 개최 (필요시)	
[6] 상황관리 전담반	[6-1] 상황관리전담반 구성 및 운영 (필요시)		
복구 비상 대응	재난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본격 재난대응 단계		심각
	[7] 언론대응	[7-1]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8] 재난관리본부 운영	[8-1] 재난관리본부 운영 편성	
		[8-2] 상황실 운영	
		[8-3] 상황총괄	
		[8-4] 사고처리	
		[8-5] 복구지원	
		[8-6]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8-7] 행정지원 등			
수습 복구	긴급구조구급이 완료된 후 일상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수습복구를 시행하는 단계		복구
	[9] 수습 및 복구	[9-1] 재난수습 진행상황 모니터링	
		[9-2] 재난피해 현장조사	
		[9-3] 종합복구계획 수립	
		[9-4]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1. 재난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자연재난	시설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주관부서
	시설과	계장	임○○	7192, piano@mokwon.ac.kr	
	시설과	담당	장○○	7196, jjh@mokwon.ac.kr	
상황전파	총무과	과장	오○○	7161, heawon@mokwon.ac.kr	협조부서
	총무과	담당	윤○○	7163, dahye@mokwon.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태풍	<p>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호우	<p>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대설	<p>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지진	<p>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폭염	<p>낮 최고기온이 섭씨 33도를 넘어서는 매우 더운 날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주의보는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는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 안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한 재난 대응

- (호우) 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교내 배수로·옥상 청소(배수거름망 등)·베란다/발코니 우수관 청소를 통해서 강의실 및 시설물 침수 예방
- (태풍) 현수막 등 부착물의 정비를 통해서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
- (대설) 겨울철 대설을 대비해서 제설용품 구비 및 제설함 보충, 부서별 제설구역 배정 후 대설 시 교내 제설 실시하여 위험지역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육관을 겨울철 폭설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주 1회 육안점검 실시
- (폭염) 온열질환(열사병, 열경련 등) 예방을 위해서 폭염경보 발생 시 옥외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2~5시는 옥외 작업 중지 권고, 탄력근무제(조기출근 및 조기퇴근) 도입 고려, 수분 공급을 위한 물병 지급 실시
- (교육시설 안전점검)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의 재해취약시기에 건축물, 시설물,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옹벽, 사면, 실험실 등 각 분야별로 시설과 집중 안전점검 실시
-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여름철 및 겨울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시설 지정을 통해서 관리부서에서 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
-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전반적인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의식 고취 및 교내 위험요소 제거

○ (대비) 재난대응훈련 및 홍보활동

-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 자위소방대 구성 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성반과 연계하여 구성하며, 훈련 시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구성반을 안내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홍보물 게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단 계	구 분	대응/조치사항
1단계 재난이 빈발하는 시기,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증가 하는 시기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2단계 사고 발생 신고(보고) 발생, 응급처치 인명피해 발생	주의	
3단계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 예상, 통원치료 인명피해 발생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 (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4단계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대규모 피해 발생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피해신고)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영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 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모니터링 주요 결정사항**

-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방법
- 재난(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현황 측정, 원인 분석 및 평가방안 모색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기 결정
- 사전 재난(사고)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상기 활동에 대한 문서화 작업
-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 **모니터링 주요 착안사항**

- 각 대학의 지리적·환경적 요인 고려 및 최근 재난(사고)현황 사전 중점 분석
- 각 대학의 재난(사고)관리 정책의 적절성·시의성 및 준수 여부
- 재난(사고) 발생 후, 재난(사고)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

◎ **모니터링 점검 활동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모든 재난(사고)발생 매뉴얼에 반영**

◎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사항의 원인 검토·제거, 유사 부적합사항 규명**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주요 예산 편성 현황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예정)	합계	
시설용역관리사업(관리과)	5.5	5.5	6.0	17	옥상 청소
청소및소모품관리사업(시설과)	3	3	3	9	제설 대비
계	8.5	8.5	9	26	

□ 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

- 교직원 소방훈련 시 연계하여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련 법·규정·지침·매뉴얼 등

구분	관련 사항	비고
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	-	
지침	-	
매뉴얼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자연재난	시설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주관부서
	시설과	담당	박○○	7197, lucky010000@mokwon.ac.kr	
	시설과	담당	장○○	7196, jjh@mokwon.ac.kr	
생활관 (소방훈련)	생활관	관장	최○○	7400, m389003@mokwon.ac.kr	협조부서
	생활관	조교	김○○	7403, oh6304@gmail.com	
상황전파	총무과	과장	오○○	7161, heawon@mokwon.ac.kr	협조부서
	총무과	담당	윤○○	7163, dahye@mokwon.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해당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소방 월 점검) 월 1회,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상태가 유지될수 있도록 예방점검 및 수리 실시
 -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실시 후 이상 시 보수 실시
 -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 여부를 점검 후 이상 시 보수 실시
 - (생활관 소방대피 훈련)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생활관 입사 사생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대피훈련 실시
 - (교직원 소방훈련) 연 1회, 자위소방대를 구성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함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자연재난 공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자연재난 공통)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주요 사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소방안전관리사업	2.2	2.3	2.7	7.2	소방교육 등
계	2.2	2.3	2.7	7.2	

※ 소방시설 관리는 “교육시설 안전사고”에 포함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생활관 화재대피 훈련	2022.04.06.	15분	1292	-
	2022.10.11.	15분	1145	-
교직원 소방훈련	2022.11.21.	1시간 30분	96	-
	2022.11.22.	1시간 30분	116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생활관 화재대피 훈련	▪ 화재재난 대피훈련을 통해서 화재 발생 시 추가 피해 예방
교직원 소방 훈련	▪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에 따른 소화, 통보, 피난 훈련 실시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생활관 화재대피 훈련	화재대피 훈련	2	1300	
교직원 소방훈련	자위소방대 훈련	1	12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생활관 화재대피 훈련	▪ 화재재난 대피훈련을 통해서 화재 발생 시 추가 피해 예방
교직원 소방 훈련	▪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에 따른 소화, 통보, 피난 훈련 실시

□ 관련 법·규정·지침·매뉴얼 등

구분	관련 사항	비고
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규정	소방안전관리 규정	
지침	-	
매뉴얼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2)	

2. 안전사고

① 학생안전사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학생 안전	학생복지과	부처장	김○○	7141, studen@mokwon.ac.kr	주관부서
		직원	강○○	7142, studen@mokwon.ac.kr	
교통·생활 안전	시설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계장	임○○	7192, piano@mokwon.ac.kr	
		담당	장○○	7196, jjh@mokwon.ac.kr	
	관리과	담당	이○○	7183, lhy2962@mokwon.ac.kr	
보건진료	보건진료소	담당	이○○	7156 heho2014@naver.com	협조부서
비상연락	총무과	과장	오○○	7161, heawon@mokwon.ac.kr	
		담당	윤○○	7163, dahye@mokwon.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입원)	0	0	0	0	0
	계	0	0	0	0	0

※ 입원이 필요한 중대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예방·대응 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행사계획 수립 시 「학생 단체활동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작 3일(교내) 전까지 행사 승인부서(학생복지과)에 제출
- 대규모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승인요청서」와 함께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대책 마련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지침 마련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점검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대학생 집단행사 시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학생집단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기획자, 인솔자,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
-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
- 보험가입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요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숙박 및 식사 안전
- 집단연수 계획 수립에서 계획 시행까지 전 추진과정에 대해 인파밀집 상황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하되, 자체 점검 및 사전교육 조치
-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인솔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 조치
- 집단연수, 행사 운영 등의 과정에서 위험한 인파 속에서는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 가장 가까운 출구, 모든 출구 위치 확인 필요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 (상해보험) 대학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 상해+후유장애+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례비+상조지원 등 보상

❖ (산재보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노동부고시) 개정('18.9.11)

< 참여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부고시) >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및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상 실습학기제 등 포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대상	▶ 약 6만명	▶ 약 15만명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실습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건·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교내 교통안전 (시설과)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딴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자를 위한 전용주차 공간 형성으로 교내 이용자의 보행 불편 해소

○ 생활 안전 (시설과)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장,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보건진료소)

- 교내 자동제세동기 비치 및 관리 (관리부서 : 관리과, 보건진료소, 보안팀)

1. 신관 생활관 3층 로비	2. 학생회관 보건진료소 내부	3. 학생회관 로비
		
4. 도서관 경비실 앞	5. 사회과학관 지하 보안팀 상황실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사고등급평가 매트릭스 >

영향도 규모 영향 관심 행위 인원 사건 피해	<p align="center">극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정상적인 학교운영 중단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즉각적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규모) 대규모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p align="center">중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학교운영에 전반적 지장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규모) 많은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계	경계	심각	심각	심각	심각
	<p align="center">중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학교운영의 중요 기능의 일시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규모)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계	경계	경계	경계	심각	심각
	<p align="center">경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단순조치에 의한 학교운영 정상화가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발생 (규모) 몇몇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주의	주의	주의	경계	경계	심각
	<p align="center">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학교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미한 지장 및(또는) 교직원의 개입과 학교장 보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규모) 1명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관심	관심	주의	경계	경계	심각
	<p align="center">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학교운영에 영향이 없고, 112 또는 119 신고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 		관심	주의	경계	경계	심각
사고 등급평가 매트릭스		없음	사소	경미	중간	중대	극심
		학생 또는 교직원 안전에 대한 영향 없음	응급처치 또는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주변의 지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손상	응급처치 또는 통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전문가 주변의 지원이 필요한 손상	통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손상	입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손상	사망, 영구장애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광범위한 의료지원 필요
요인 1. 학생 및(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

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예정)	합계	
조경관리사업(시설과)	15	15	60	90	보차도 관리
계	15	15	60	90	

□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대상	예산
학생	상시	▪ 각종 행사 시 주최 관계자 및 참석자 등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행사 안전교육 안내	▪ 행사 진행 전 준비사항 및 안전관련 대비 사항 안내

□ 관련 법·규정·지침·매뉴얼 등

구분	관련 사항	비고
법	고등교육법	
규정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지침	-	
매뉴얼	대학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2022 예정)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0)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2023년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준수 (교육부, 2023)	

② 외국인유학생 안전사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외국인 유학생 안전	국제협력처	처장	천○○	7130, cmh@mokwon.ac.kr	주관부서
		부처장	권○○	7129, daniel1978@mokwon.ac.kr	
	국제교류과	과장	김○○	7131, youngmi@mokwon.ac.kr	
		담당	노○○	7132, jane@mokwon.ac.kr	
		담당	김○○	7137, jin320003@mokwon.ac.kr	
		담당	당○○○	7136, dtdien1207@mokwon.ac.kr	
		담당	하○	7138, heyi01@mokwon.ac.kr	

□ 위험요인

- (외국인유학생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캠프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및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외국인유학생 한국법령안전사고) 국내에 체류하며 한국법령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외국인 유학생의 생명, 신체 또는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외국인유학생 질병사고) 국내 체류지에서 발생 또는 유행하는 감염병 및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외국인 유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발생건수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1	0	0	1
	부상	0	0	0	0	0
	계	0	1	0	0	1

□ 원인분석

- (외국인유학생 학교안전사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의 경우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대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 진행 시 사전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진행 하고 사고 예방에 대비하고 있음
- (외국인유학생 한국법령안전사고) 한국법령 및 교통법규, 문화 등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

로 발생하는 금전적 사기, 보이스피싱, 폭력 피해,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음

- (외국인유학생 질병사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등과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어 겪는 질병 사고로 신규 입국 유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예방·대비) 대전서부경찰서 및 기타 협력 공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매 학기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법령이해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 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안전사고 공통참고)

- (대응·조치) 본교 국제협력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를 확인하고 관내 출입국사무소 및 서부경찰서, 보건소 등과 연락하여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 실시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안전사고 공통 참고)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단위 : 천원)

대책명	연도별 예산				비고
	2021	2022	2023(예정)	합계	
국제교류지원사업	1,155	-	-	1,155	
외국인유학생관리사업	10,869	300	-	11,169	
한국어교육과정운영사업	-	756	1,200	1,956	
계	12,024	1,056	1,200	14,280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협조기관	교육일	교육시간	참여인원
성폭력예방교육	학생상담센터	2022.04.18.	1시간40분	476명
교통안전교육	서구청	2022.11.11.	30분	19명
안전교육	서부소방서	2022.12.08.	1시간	30명
성폭력예방교육	학생상담센터	2022.12.12.	1시간	558명
한국법령이해교육	서부경찰서	2022.12.23.	2시간	958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성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성추행·성폭행, 성범죄등 112 전화·문자 신고 방법 안내
한국법령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이해교육 실시 - 보이스피싱·도박·마약범죄 등 모르고 저지르기 쉬운 범죄, 유학생 시간제 취업 및 체류 지침 안내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 대상 소방안전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 심폐소생술 및 도로교통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예방을 위한 해외 입국 유학생 모니터링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성폭력예방교육	학위과정	2	(예상)200명	미정
	어학연수과정	1	(예상)350명	미정
한국법령이해교육	학위과정	2	(예상)200명	미정
	어학연수과정	2	(예상)350명	미정
안전교육	학위과정	1	(예상)250명	미정

③ 교육시설 안전사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총괄	시설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주관부서
전기		계장	임○○	7192, piano@mokwon.ac.kr	
전기		담당	김○○	7198, kwan1104@mokwon.ac.kr	
소방 연구실		담당	박○○	7197, lucky010000@mokwon.ac.kr	
건축		담당	정○○	7194, yong@mokwon.ac.kr	
통신		담당	윤○○	7195, gubongmt@mokwon.ac.kr	
설비		담당	김○○	7193, shj0925@mokwon.ac.kr	
안전		담당	장○○	7196, jjh@mokwon.ac.kr	
콘서트홀		담당	이○○	7916, conhall@mokwon.ac.kr	
조경		담당	김○○	8288, 822007@mokwon.ac.kr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시설 안전점검) 건축물시설·설비 등 관련 법을 준수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후 유지보수 실시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교육시설 주요 안전관리 현황(교육시설 실행계획 포함 사항) >>

점검명	대상시설	실시시기	점검방법	비 고
교육시설 안전점검	목원대학교 소관 시설물(건축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3회 -해빙기(2~3월) -여름철(5~6월) -동절기(11~12월) 	대학본부 시설분야 기술인이 점검	자연재난 대응 점검
안전점검의 날	목원대학교 소관 시설물(건축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4일 전후 	대학본부 시설분야 기술인이 점검	자연재난 대응 점검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	생활관, 체육관, 위험 실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5~10월) • 겨울철(11~3월) 	사용부서(학과)에서 주 1회 육안점검	자연재난 대응 점검
특수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교회, 체육관, 콘서트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3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	
시설물 안전점검	대덕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연 2회) • 정기 안전점검 (2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	
석면건축물 관리	석면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평가 (연 2회) • 석면농도측정 (2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	
전기시설 안전점검	전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1년 1회) • 정기검사 (3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	
소방시설 안전점검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점검 • 작동기능점검 (1년 1회) • 종합정밀점검 (1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	사회재난 대응 점검 (화재대비 점검)
연구실 안전점검	이공계 연구실 및 예체능 위험 연구실(약 17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	연구실안전 대응 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승강기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점검 • 정기검사 (1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	
보일러 안전점검	생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사용안전검사 (1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	

도시가스 안전점검	생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1년 1회) • 정압기분해점검 (4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	
저수조 청소	저수조, 고가수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1년 2회) 	전문기관에 의뢰	
상수도 수질검사	저수조, 급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 하반기 	전문기관에 의뢰	
대기배출시설 대기측정	생활관 보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측정 (연 2회) 	전문기관에 의뢰	
지하수 이용허가연장 및 사후관리	교내 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사후관리 (5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	
지하수 수질검사	교내 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관리 (2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점검	콘서트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1회/3년) • 정밀점검 (1회/9년) 	전문기관에 의뢰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안전사고 공통참고]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안전사고 공통참고]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예정)	합계	
건축시설보수관리사업	140	130	200	470	
시설용역관리사업	260	320	166.6	746.6	
기타시설관리사업	136	158.3	197	491.3	
계	536	608.3	563.6	1,707.9	

2022년 교육·훈련 결과

해당 없음

2023년 교육·훈련 계획

해당 없음

□ 관련 법·규정·지침·매뉴얼 등

구 분	관련 사항	비 고
법	교육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등에관한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건축관리법 지하수법 수도법	
규정	소방안전관리 규정 전기안전관리 규정	
지침	-	
매뉴얼	-	

4 연구실 사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연구실 안전	시설과	담당	임○○	8285, 818031@mokwon.ac.kr	주관부서
	시설과	담당	박○○	7197, lucky010000@mokwon.ac.kr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융합연구 개발 활성화에 따른 이차전지, 나노, 수소 등 신규 유해인자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발현 가능성 증가로 지속적인 관리 증대

□ 피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	-	-	-	1	1
재산피해	-	-	-	-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0	0
	부상	-	-	-	158	158
	계	-	-	-	158	158

□ 원인분석

- (화상) 수업 중 손을 알코올 소독 후 무균작업대에서 알코올램프를 사용해서 불을 사용하다가 손에 불이 옮겨 붙어 2도 화상이 발생함. 이후 병원 치료 후 보험을 통해서 병원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화기취급 시 주의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세부사항은 연간 연구실안전계획에 따름

- (안전교육) 실험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지원 및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 (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연구실 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진단을 통한 빠른 치료로 치료효과를 높이고 악화를 예방하는 등 건강 유지 및 증진
- (안전점검) 교내 연구실에 일반·기계·전기·화공·소방·가스·산업위생·생물안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문안전점검 기관에 의뢰 후 위험요소를 발견 및 해소하여 위험요인을 제거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연구실보험)** 위험요소가 큰 이공계 연구실 사고에 대해서 사고발생 시 현장조사 및 관련 법에 따른 보험을 지원
 - ※ 이공계 학과 외에도 일부 예체능 계열 고위험 연구실의 학생도 대상자에 포함하여 사고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안전사고 공통 참고)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안전사고 공통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사항



■ 연구실사고 보고 기준(시행규칙 제14조)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사고

■ 중대연구실사고 판단기준(시행규칙 제2조)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1. 사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애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별표1 (후유장애등급별 보상금액) 참고 [관련 고시 바로가기]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등
-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예정)	합계	
실험실안전관리사업	64.3	72.8	71.1	208.2	
계	64.3	72.8	71.1	208.2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연구활동종사자	1학기	2~6시간	974 명	
연구활동종사자	2학기	2~6시간	991 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 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온라인)
정기 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온라인)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 신규교육 ▪ 정기교육	상시 (온라인교육)	약 1,800 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 교육훈련	▪ 집체교육 또는 연구실 안전교육(온라인)
정기 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온라인)

□ 관련 법·규정·지침·매뉴얼 등

구분	관련 사항	비고
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규정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매뉴얼	-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위원장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	학생처장	전○○	7937, studen@mokwon.ac.kr	주관부서
위원		학생복지 부처장	김○○	7141, studen@mokwon.ac.kr	
위원		관리처장	방○○	7180, bjaein@mokwon.ac.kr	협조부서
위원		생활관장	최○○	7400, m389003@mokwon.ac.kr	

□ 위험요인

- (코로나-19)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발생 및 지역간·계층간 학습격차 심화

□ 원인분석

- 질병관리청, 보건소, 지자체 조사 결과
 - 교내 학생,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은 증대추세이며, 감염원인은 해외입국과 밀집시설 이용으로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교육·관리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비대면 교육)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감염병 공통]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작성예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참고 : 선별진료소 이동 방법 >

- 가정에서 발견 : 가급적 자가 차량 이용
 - 학교에서 발견 : 보호자 인계 또는 119신고하여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이동
- ※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

-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 격리 시, 등교(출근)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확진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또는 접촉이 예상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자가격리* 실시
 - * 보건당국에서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조치 시행
 -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상태 관리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계기교육 실시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참고 자료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밀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참고 자료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이동 경로 불명확	⇒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및 학생	상시	-	구성원 전체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대응 지침 안내 ▪ 방역관련 안내 ▪ 예방관련 안내 ▪ 최근 동향 안내

□ **관련 법·규정·지침·매뉴얼 등**

구분	관련 사항	비고
법	감염병예방법	
규정	-	
지침	-	
매뉴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② 생활관 결핵 예방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과장	생활관	관장	최○○	7400, m389003@mokwon.ac.kr	주관부서
담당		조교	김○○	7403, oh6304@gmail.com	

□ 위험요인

- **(결핵균)** 결핵균은 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를 통하여 전파됩니다. 즉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가 말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분비물 방울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들이실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감염이 진행됩니다.
- **(국내동향)** 국내 결핵관리는 1962년 국가결핵관리체계 구축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OECD 가입국 중 발생률은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결핵사망률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감염자 수	0	0	0	0	0	0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 원인분석

- 해당없음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결핵검사 확인)** 생활관 내에서 밀접접촉 시 공기를 통해서 감염위험성이 높은 질환이므로, 생활관 입사 전에 결핵진단서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확보함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감염병 공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감염병 공통)

□ 관련 법·규정·지침·매뉴얼 등

구 분	관련 사항	비 고
법	감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매뉴얼	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청, 2022)	

4. 범죄

① 일반범죄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과장	관리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주관부서
담당	관리과	담당	이○○	7183, lhy2962@mokwon.ac.kr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 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 원인분석

- 해당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야간시간 동안 2회 이상 정기 순찰 및 필요시 불시 순찰)

- 대학생들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을 최대화
 - ① 주기적으로 가로등을 유지보수, 조경수목으로 인한 가로등 불빛이 가려질 경우, 전지를 통해서 일정한 조도 확보
 - ② 야간시간 동안 가로등을 상시 가동해서 자연적 감시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주민의 산책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스런 감시를 통해서 범죄기회를 억제
 - **(기계적 감시)** 건물내부에 CCTV를 24시간 운영 및 녹화를 통해서 범죄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후 즉시 대응 및 사고 발생 시 영상의 기록 보존을 통해서 증거물 보존·기록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및 교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입·출입 시간을 기록하여 사고 발생 시 조회 가능하도록 조치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 **(유지관리)** 교내 시설물 및 환경을 깨끗하게 잘 유지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비상벨)** 화장실 내 비상벨을 설치하여 문제 발생 시 보안팀으로 연락이 가며, 보안팀에 확인 즉시 현장 출동하여 범죄를 예방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예정)	합계	
시설용역관리사업(관리과)	840	840	840	2,520	전문보안 용역
계	840	840	840	2,520	

교육 · 훈련

해당없음

관련 법·규정·지침·매뉴얼 등

구 분	관련 사항	비 고
법	폭력행위처벌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규정	-	
지침	-	
매뉴얼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2 성범죄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소장	양성평등상담소	소장	류○○	7434. ryubr@mokwon.ac.kr	주관부서
교수	학생상담센터	교수	이○○	8181, hyoju.lee@mokwon.ac.kr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성희롱	2	4	3	4	1	2.8
	성폭력	1	0	1	3	0	1
	계	3	4	4	7	1	3.8
피해자 수	성희롱	2	4	3	8	2	3.8
	성폭력	1	0	1	3	0	1
	계	3	4	4	11	2	4.8

□ 원인분석

- 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 성폭력 발생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성희롱 행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등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필요
- 신입생 남학생의 SNS를 통한 스토킹 사건이 발생. 피신고인의 인간관계를 발달시켜 가는 부분에서의 미성숙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발달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불법촬영카메라 단속 실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 향상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연 1회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단속 실시

-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 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예정)	합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1.95	0	2	3.95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0.64	9.59	1.75	11.98	
폭력예방교육 신규 콘텐츠 구입	0	0	8.5	8.5	
계	2.59	9.59	12.25	24.43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폭력예방교육(학생)	2022.03.02. ~2022.12.20.	120분	4,859명	1,000,000원
폭력예방교육 (교직원)	2022.03.02. ~2022.12.20.	240분	1,016명	600,000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폭력예방교육 실시 ▪ 신청 학과(부)에 한하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LMS에 교육 영상을 탑재하여 재학생 온라인 상시 교육 실시 ▪ 교직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직 별도 대면 교육 진행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폭력예방교육(학생)	온/오프라인	온라인 상시, 신청 학과(부)에 한하여 대면 교육 예정	재학생의 50% 이상	5,000,000원
폭력예방교육(교직원)	온/오프라인	온라인 상시, 대면 교육 2회 예정	재직자의 75% 이상	600,000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폭력예방교육 실시 예정 ▪ 신청 학과(부)에 한하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예정 ▪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구매하여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교직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직 별도 대면 교육 진행 예정

□ 관련 법·규정·지침·매뉴얼 등

구 분	관련 사항	비 고
법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처벌법	
규정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규정	
지침	-	
매뉴얼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산업안전	시설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주관부서
	시설과	계장	임○○	7192, piano@mokwon.ac.kr	
	시설과	담당	장○○	7196, jjh@mokwon.ac.kr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해당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애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2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

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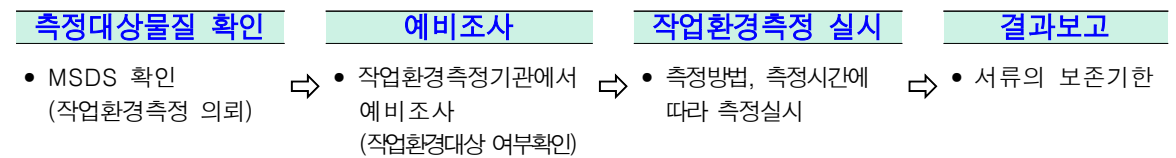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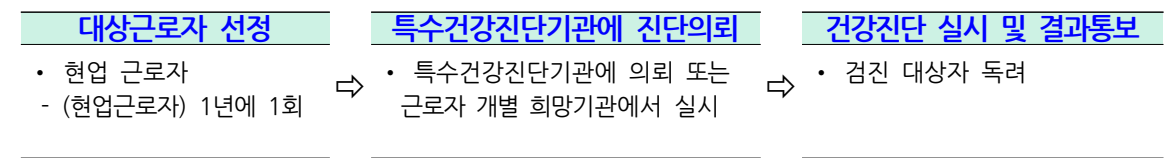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사고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수시위험성평가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서류보존
·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

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예정)	합계	
안전보호구 구입	3	5	6	14	
산업안전보건교육	0	3	4	7	
계	3	8	10	21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현업근로자 대상)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천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매월 초 (11회)	2시간	26명	2,420
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임용 시	8시간	4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매달 집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 신입직원 임용 시 교육 실시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현업근로자 대상)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천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매월 초	2시간	26명	3,000
산업안전보건교육 (신규교육)	신규직원 임용 시	-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매달 집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신규교육)	▪ 신입직원 임용 시 교육 실시

□ 관련 법·규정·지침·매뉴얼 등

구분	관련 사항	비고
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		
지침		
매뉴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2 중대재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042-829-내선)	비고
중대재해	시설과	과장	이○○	7191, leessu@mokwon.ac.kr	주관부서
	시설과	계장	임○○	7192, piano@mokwon.ac.kr	
	시설과	담당	장○○	7196, jjh@mokwon.ac.kr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해당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

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노사 간담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개선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방문 의견 청취 의견청취함(WIKI 게시판) 안전보건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사고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즉시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수시위험성평가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발생일로부터 <u>1개월 이내</u>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참고 자료 ☞ 중대재해 관리체계 및 이행계획 참조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p><<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p><<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산업재해 분야에서 관리)

교육·훈련

○ 해당사항 없음 (산업재해 분야에서 관리)

관련 법·규정·지침·매뉴얼 등

구 분	관련 사항	비 고
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	
지침	-	
매뉴얼	2022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2)	

1.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학생복지과)

가입목적

○ 대학 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면적	연간 총보험료	비고
2022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2022-03-22 2023-03-22	162,802㎡	17,338	

※ 보험 만기 시 갱신 예정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
	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사고당
교육기관배상_대인	100,000	300,000	무 한	100,000
교육기관배상_대물		100,000	무 한	100,000
구내외치료비_대인(학생)	2,000	2,000		100,000
구내외치료비_대인(신입생)	2,000	2,000		

2. 교육시설안전공제 (시설과)

가입목적 (화재보험)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 화재(벼락 포함) · 폭발 · 붕괴·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을 지원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면적	연간 총보험료	비고
2023	교육시설 공제(화재보험)	2023-01-01 2023-12-31	162,802㎡	25,666	

※ 보험 만기 시 갱신 예정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화재(법정금액)	150,000	1,000,000	
시설소유(관리)자 대인	300,000	300,000	
시설소유(관리)자 대물		10,000	

3. 연구실 안전보험 (시설과)

□ 가입목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26조

- 연구활동종사자(이공계 학생 등)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피수익자로 하여 치료비를 지원
- ※ 일부 예체능계열을 포함하여 보험 지원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학생수	연간 총보험료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2022-06-09 ~ 2023-06-08	3,050	2,595,130	1	158	0	0	

※ 보험 만기 시 갱신 예정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200,000	
장애급여	200,000	200,000	
치료비	100,000	100,000	
장의비	10,000	10,000	
입원급여	50	50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시설과)

가입목적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 도시가스 사용으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누출로 타인의 신체, 재물을 손상케 한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가입현황

(단위 : 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가입대상	연간 총보험료	비고
2023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2023-01-04 2024-01-04	생활관 난방용 보일러의 도시가스 사용	15,000	

※ 보험 만기 시 갱신 예정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		비고
	구 분	금 액(천원)	
도시가스사용자배상책임 (대인)	사망후유장해	80,000	
	부상	15,000	
도시가스사용자배상책임 (대물)	대물	300,000	

5. 주차장배상책임보험 (관리과)

가입목적

주차장배상책임

- 주차시설 및 동 시설의 관리에 기인한 사고 시 보관자 배상책임과 제3자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상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가입대상	연간 총보험료	비고
2022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	2022-07-31 2023-07-31	옥내주차장 1,782㎡	4,628	

※ 보험 만기 시 갱신 예정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대인	100,000	100,000	
대물		30,000	

6.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시설과)

가입목적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가입대상	연간 총보험료	비고
2022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2022-09-25 2023-09-25	교내 승강기	530	

※ 보험 만기 시 갱신 예정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대인	80,000	무한	
대물		10,000	